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8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 장철민·김한규·한병도

허 영•박지원•민병덕

장종태 • 이기헌 • 윤준병

복기왕 • 한창민 • 이인영

고민정 · 김태선 · 박정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,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됨.

탄핵소추된 자는 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 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.

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신분이 유지되고,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됨.

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, 이는 '무노동 무임금' 원칙에 어긋남.

또한, 「국가공무원법」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하도록하고 있음(제80조제3항 등).

현행 법률 제도를 확장할 때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함.

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(안 제4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(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)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권한행사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탄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 </u> | 제49조의2(권한행사가 정지된 공 |
| | 무원의 보수) 탄핵소추 의결을 |
| | 받은 자는 권한행사 정지 기간 |
| |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. |